

【NCS기반 채용 직무 설명자료 : 사이버보안】

| 채용분야 | 사이버보안 | 분류체계 | 대분류 | 미개발 |
|----------|--|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|
| | | | 중분류 | 미개발 |
| | | | 소분류 | 미개발 |
| | | | 세분류 | 사이버보안(기술원 자체개발) |
| 기술원 주요사업 |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의무 이행을 통해 국가 핵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「원자력안전법」 제6조에 의해 설립된 기관임. 기관의 주요 임무는 원자력관련 시설 및 핵물질 등에 대한 안전조치, 수출입통제, 물리적 방호, 사이버보안, 핵비확산·핵안보 관련 정책개발 및 국제협력 등이 있음. | | | |
| 직무정의 | ○ (사이버보안 규제) 원자력시설에 대한 사보타주 및 핵물질 불법이전을 위한 사이버공격을 예방·탐지·대응하기 위한 시설의 사이버보안 대책에 대하여 위협평가, 심사, 검사 및 훈련평가 등을 통해 확인하는 업무로서, 아래의 주요 업무로 이루어짐. | | | |
| 직무수행내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사이버 위협평가) 원자력시설 사이버보안체계 설계의 기준이 되는 최대 위협, 즉 설계기준위험을 설정하고 시설이 해당 위협수준까지 대응할 수 있는지를 시나리오 기반으로 평가하는 업무 ○ (규정 심사) 원자력시설의 “정보시스템보안규정”이 설정된 사이버 설계기준 위협까지 대응할수 있도록 마련되었는지를 관련 규제요건 및 기준에 의거 검토하는 업무 ○ (검사) 심사 완료된 시설의 “정보시스템보안규정”에 따라 시설의 디지털 계측제어시스템 등 필수디지털자산을 사이버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관련 절차 및 대책들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업무로서 2년 주기의 정기검사 및 사건발생시에 수행하는 특별검사 업무 수행 ○ (훈련평가) 사이버침해 사건이 발생했다는 가정 하에, 원자력 시설자가 초동 조치, 사건 수집/분석 등 침해에 따른 사이버 사건대응을 적절히 수행하는지를 실전 훈련 기반으로 평가하는 업무 ○ (규제기술 연구) 디지털 계측제어시스템에 특화된 사이버보안 취약점 분석 및 이를 제거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대책을 연구하고, 해당 보안대책의 효과성 평가를 통해 사이버보안 규제기준을 개발하는 업무 | | | |
| 전형방법 | ○ 서류전형 → 필기시험 → 면접전형(전공면접 및 종합면접) | | | |
| 일반요건 | 연령 | 무관 | | |
| | 성별 | 무관 | | |
| 교육요건 | 학력 | 학사, 석사 | | |
| | 전공 | 이공계열 | | |
| 필요지식 | ○ 컴퓨터공학 일반, 정보보안 지식, 원전 계통 관련 지식, 산업계제어시스템 관련 지식 | | | |
| 필요기술 | ○ 사이버보안 관련 국내외 법령 및 기준의 해석 및 적용 능력, 사이버보안 관련(악성코드 분석, 취약점 분석, 보안대책 점검, 공격탐지 등) 이론 또는 실무 기술, 디지털계측제어시스템 설계, 개발 혹은 운영 기술 | | | |
| 직무수행태도 | ○ 논리적·객관적·분석적 사고, 팀원에 대한 배려 및 의사존중, 조직 및 팀원의 비전에 따른 목표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직무 수행 자세, 조직 구성원과의 협동력, 직무의 특성에 따른 비상업무 상시 대응 자세, 관련 분야의 선도적 역할을 위한 자기개발, 합리적인 업무처리 능력 및 기한 준수 태도 | | | |
| 필요자격 | ○ 정보보안 관련 국내외 자격증(별도의 가점은 미부여) ○ 사이버보안 또는 계측제어 관련 1년 이상 경력자 우대(별도의 가점은 미부여) | | | |
| 직업기초능력 | ○ 의사소통능력, 수리능력, 문제해결능력, 자기개발능력, 자원관리능력, 대인관계능력, 정보능력, 조직이해능력, 직업윤리, 기술능력 | | | |
| 참고사이트 | ○ www.kinac.re.kr 및 www.ncs.go.kr | | | |